

# KERI Insight



## 기업과 기업가정신: 이해와 오해



전용덕 대구대 교수(ydjeon@daegu.ac.kr)

시장에서 기업가의 기능 또는 역할을 자세히 정의하고, 기업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조직, 비용, 생산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며,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크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책 등을 검토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초래할 부작용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은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나 주장 그리고 반기업적 정부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나 주장의 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업과 기업가는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점은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과 기업가는 현대의 복잡한 교환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기업과 기업가를 억제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점이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정서, 주장, 정책 등을 없애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서론

최근 대통령은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대기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쏟아놓거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정치가나 공무원은 “대기업은 스스로 생존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다른 한편 기업과 기업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업가정신의 저하가 보수경영을 초래하고 그런 보수경영이 결과적으로 저투자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반(反)기업정서 또는 반대기업 정서 또는 반기업가 정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일부 정치가는 기업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기업인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가인가? 사회적 기업은 변형의 엔진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법률이 우리 사회와 경제계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문은 다수일 뿐 아니라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과연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이 초래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실종,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법률과 제도의 변화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성장의 엔진이고, 기업가는 그런 엔진을 멈추지 않고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업가의 기능, 기업가 기능의 몇 가지 특성, 기업가 기능과 기업의 조직, 비용, 생산과정의 관

계,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크기에 대하여 이론적 조명을 한다. 제3절에서는 기업과 기업가 기능에 대한 오해와 비판을 분석하고 반기업적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변형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와 정책을 없애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 2. 기업과 기업가의 기능<sup>1)2)3)</sup>

### 기업가의 기능: 세 가지

‘자본가-기업가’가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sup>4)</sup> 넓게 규정하여 상업세계에서 기업가의 기능 또는 역할이란 시장과정을 구체화하고 조종하는 것(shaping and driving the market process)이다.

세분해 보면 기업가는 세 가지 기능 또는 역할을 한다. 첫째, 기업가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불확실성을 떠맡는(uncertainty-bearing) 기능을 한다.<sup>5)</sup> 그 과정에서 기업가는 이윤 또는 손실을 내기도 한다. 이때 기업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잘 예측하면 이윤을 창출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라스바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기업가는 불확실성 그 자체를 즐기려고 창출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는 가능한 한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한다.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상황에서 인간행동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하며, 그가 가장 숙련되거나 혹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후보자이다. (중략) 이윤과 손실은 기업가적 불확실성의 결과들이다.”<sup>6)</sup> 좁게 정의하여 미래에 대한

1) 이 절은 주로 라스바드(Rothbard)가 1962년에 발간한 책과 셀르노(Salerno)의 2008년 논문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자유기업원, 2006과 Joseph T. Salerno, “The Entrepreneur: Real and Imagined”,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11, 2008, pp.188-207.

2) 뎀세츠(Demsetz)는 기업의 설립과 흥망성쇠를 통틀어 ‘상업적 실험(commercial experiment)’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다음에 보겠지만 시장과정에서의 기업가의 역할과 기업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일 뿐 아니라 다양하다. 그 점에서 상업적 실험이라는 용어는 그런 다양한 역할과 영향을 표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기업가정신’이라는 표현은 유능한 기업가에게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가의 기능’ 또는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4) 기업가는 자신의 자산 또는 자본을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소유자(business owner)가 되기 때문에 자본가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기업가라는 용어는 자본가기업가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5) 불확실성을 떠맡는 것은 불확실성을 추구하는(uncertainty-taking) 것과 다르다.

6) Murray N. Rothbard,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자유기업원, 2006, pp.657-658.

예측이란 시장에서 기업가 자신이 생산하는 최종재화의 미래 가격(future price of final product)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sup>7)</sup>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상적인 세계에서는 이윤 또는 손실은 사라진다.<sup>8)</sup>

둘째, 기업가는 자본가로서 자신이 소유한 자본 또는 자산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노동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최종재화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로서 기업가가 받는 것은 순이자(pure interest)이다. 기업가가 자본가로서 받는 이자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상 세계에서도 남아 있을 것이다. 커즈너는 기업가에게서 이 점을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기능만을 기업가 기능으로 지목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가는 의사결정 기능(decision-making function) 또는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 기능이란 기업가 소유 자산의 사용과 그 자산을 관리할 인력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기능을 말한다. 기업가 소유 자산의 사용이란 생산을 통제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생산된 재화가 팔릴 때까지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기업가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 능력에 맞는 생산과정의 선택도 포함된다. 관리 인력이란 기업가의 시간, 능력, 지식, 태도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믿음만한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의사결정 기능은 피고용인(hired employee)에 맡겨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기업가가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능에 따라 받는 대가를 라스바드는 ‘의사결정 능력으로 인한 임대료(rents of decision-making ability)’ 또는 ‘소유권 결정으로 인한 임대료(rents of ownership-decision)’라고 불렀다. 물론 이것은 경영자들이 받는 임금과 다른 것이다. 경영자는 고용할 수 있

지만 의사결정 요소(decision-making factor)는 결코 고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요소의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시장임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스바드는 이러한 임대료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임대료는 (중략) 그 요소가 기업의 수입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양(액수)과 같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능력은 각 기업의 소유자마다 다를 것이므로 그 임대료도 다를 것이다.”<sup>9)</sup> 이 임대료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상 세계에서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 크기는 그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기업과 관련하여 더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경영자가 될 수 있다. 그 경우에 그는 기업의 소유자이자 피고용인이고 그에 따라 경영자로서의 임금(wages of management) 또는 그가 다른 곳에서 그의 경영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 즉 그의 기회비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소유자이자 기업가가 반드시 경영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기능은 기업가의 고유 기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기업가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가 받는 암묵적인 의미에서의 임금은 해당 기업에 대한 그의 기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임금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상 세계에서도 남아 있게 된다.

## 기업가 기능의 특성들

여기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기업가 기능이 지닌 몇 가지 특성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 지적한 기업가의 세 가지 기능 또는 역할은 ‘이론적으로’ 인간행위학적 관점에서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의 세 가지 기능은 모두 한 데 뭉쳐 있어서 어느 하나만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10)</sup>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7) 미제스는 이윤과 손실은 기업가가 예상한 가격들(expected prices)과 시장에서 실제로 확정된 가격들(fixed prices)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창출된다고 설명한다. Mises(1996), 제9장 참조.

8) 불확실성이 사라진 세계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 항등순환경제(Evenly Rotating Economy)를 의미한다. 항등순환경제란 불확실성이 사라진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자들이 설명을 목적으로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기 위하여 상상해낸 또는 고안해낸 것이다. 그러나 항등순환경제는 신고전학파의 장기균형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항등순환경제가 설명을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라면 장기균형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여기고 그런 상태를 비교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9) 라스바드(2006), 앞의 책, p.709 인용

10) Joseph T. Salerno, "The Entrepreneur: Real and Imagined,"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11, 2008, p.205 참조



분리할 수는 당연히 없다. 그러므로 기업가가 받는 소득도 기능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이자율은 시장에서 근사치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둘째, 기업가적 기능의 불가분성 때문에 첫 번째 기능만을 수행하는, 커즈너가 주장하는 '순수(pure) 기업가' 개념은 틀린 것이다. 사실 커즈너의 순수 기업가는 미세스가 설명만을 목적으로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은 커즈너가 지금은 고전인 된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저작을 출판했을 때 Greaves (1974), Hazlitt(1974), Rothbard(1974)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은 그 직후에 일어났던 다른 논쟁으로 거의 잊혀졌다.

그리고 커즈너가 말하는 기업가의 '경각심(alertness)'은 다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경각심만으로는 어떤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각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커즈너는 기업가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작 중요한 기업가의 행위를 빠뜨리는 잘못을 범했다.

셋째, 시장에서 미래를 잘 예측한 기업가는 이윤을 획득하고,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한 기업가는 손실을 입는다. 이윤을 획득한 기업가는 시장에서 점차 더 역할을 할 것이고 손실을 입은 기업가는 극단적인 경우에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라스바드는 이런 과정에 '자기 강화적인' 필연적인 경향은 없다고 지적한다. 즉 과거에 훌륭한 실적을 내던 기업가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과거에 경영 실적이 빈약했던 기업가도 좋은 예측을 통해 이윤을 낼 수 있다. 라스바드는 "시장은 과거의 영광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sup>11)</sup>라고 요약한다. 기업가 기능의 이러한 특성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던 기업도 망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넷째, 대규모 투자가 대규모 이윤을 획득하게 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방지해 주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본과 이윤(손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자본은 이윤을 낳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윤 또는 손실은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큰 이윤을 획득한다는 주장을 흔히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틀린 것이다.

다섯째, 슈페터(Schumpeter)는 기업가의 본질로서 혁신 또는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가 기능을 혁신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기업가 기능을 창조적 파괴에만 두는 것은 혁신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윤 기회가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적용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기업가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대개의 기업가들은 혁신자들이 아니다. 자본가-기업가는 기존의 기술적 기회라는 큰 틀 속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재화의 공급은 가능한 기술이나 기술적 노하우에 의하기보다는 자본재의 공급에 의해 제한된다. 라스바드는 "기업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 시장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자이다. 그가 혁신할 때에도 그는 역시 조정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방법이나 신제품의 잠재성에 드러나는 불일치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라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조정자란 최종재화의 미래가격이 지닌 현재가치와 생산요소들의 현재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슈페터가 강조한 혁신 또는 창조적 파괴는 그 자체로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노동자는 기업가인가? 노동자도 자신의 미래 투자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기업가이다. 즉, 그는 '노동자-기업가'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 자본가-기업가와 다르다. 자본가-기업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기업가는 언제나 양(positive)의 소득을 번다. 그것이 화폐임금(money wage)이다. 여기에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 되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그는 그만큼 시장과정을 부정하고 지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 부분만큼 그는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니다.

11) 라스바드(2006), 앞의 책, p.616 인용

12) 라스바드(2006), 앞의 책, p.648 인용

## 기업가 기능과 기업의 조직, 비용, 생산과정의 관계

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가 불확실성을 떠맡는 사람(uncertainty bearer)으로서의 기능할 때이다. 그의 미래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다면 이윤을 획득하고 기업은 번창한다. 그러나 그의 미래 예측이 부정확하면 그 부정확성에 비례하여 손실을 보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 퇴출된다. 기업가의 이러한 기능은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이다. 비록 뒤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기능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기업의 조직, 비용, 생산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가의 기능이 있다. 기업가가 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기능 또는 소유권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은 라스바드가 1962년에 발간한 그의 책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셀르노가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기업가의 그런 기능에 주목할 것을 지적했다.

의사결정 기능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의사결정 능력은 개인에 고유한 것이고(idiosyncratic) 개인적인 지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결정 능력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에 따른 임대료도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를 뿐 아니라 동일화되는 경향도 없다. 기업가의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은 당연히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기업가의 의사결정 기능은 자본가-기업가의 능력에 달려 있고 기업가 자신은 각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업가가 소유한 기업에 고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에서 의사결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 특징이다.<sup>13)</sup>

첫째, 기업가의 의사결정 기능이 기업의 본질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로 한다. 기업의 조직은 기업가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그리고 기업가의 의사결정은 그 기업가가 지닌 모든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과 감성적인 개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조직은 기업가의 의사결정 능력이 투사된 실체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의 조직은 개별 기업가의 독특한 의사결정 능력에 달려 있게 된다. 그리고 동태적인 현실 세계에서 그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조직은 영원히 변환된다(transform). 그 결과 기업의 조직 형태는 기업가의 의사결정 임대료의 즉각적인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직 형태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셀르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각 기업의 조직은 기업 소유자의 독특한 의사결정 능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 조직은 동태적인 세계에서 그의 결정에 따라 영원히 변환된다.”<sup>14)</sup> 셀르노의 지적처럼, 물론 이 점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응용하는 것은 기업의 조직 형태에 대한 더 풍부한 이론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기업가의 의사결정 기능과 기업의 비용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앞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르는 임대료도 모두 다르고 동일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차이가 기업 간에 있어서 비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 점을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차이는 한 산업 내의 ‘높은 비용’과 ‘낮은 비용’ 기업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기업들 간에 존재하는 효율성의 차이가 단순히 순간적 불확실성의 함수만이 아니고 심지어 항등순환경제에서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sup>15)</sup> 그리고 한계기업, 즉 비용이 높은 기업의 의사결정 임대료도 양(positive)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음(negative)이라면 기업을 소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기업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기업가의 의사결정 기능과 생산과정의 선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기업가는 생산과정을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가의 기술에 대한 수용능력(technical capacity)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주장은 물론 기업가가 생산과정

13)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이 방조제 공사에서 폐선을 이용하여 물막이 공사를 한 경우는 의사결정의 모든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가의 다른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4) Salerno(2008), p.206 인용

15) 라스바드(2006), 앞의 책, p.709 인용

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정의 기회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가의 기술에 대한 수용능력이 어떤 방법으로도든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크기

주류 경제학에서 기업은 블랙박스(blackbox)이다. 각종 생산요소가 투입되면 최종재화가 생산된다. 투입과 산출의 중간과정에 대해 주류 경제학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없다. 먼저 기업이 설립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 기업은 이윤동기 때문에 설립된다. 이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재화의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다. 즉, 최종재화의 미래 가격에 비해 생산요소들의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반대인 경우에는 기업가는 손실을 입는다.

주류 경제학의 기업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코즈(Coase)는 시장을 이용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했다.<sup>16)</sup>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을 내부화하게 되고 기업은 커지게 된다. 이윤동기 때문에 기업이 설립된 것이라면 거래비용의 존재는 기업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은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중간재 또는 생산요소 시장이 점차 사라지면 기업가는 계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계산비용(calculation cost)의 존재는 기업 크기의 상한을 제약한다고 라스바드는 주장한다.<sup>17)</sup> 계산의 문제란 미세스가 사회주의의 존립 불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견한 개념인데 라스바드는 그것이 또한 기업 크기의 상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계산비용의 존재 때문에 기업이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 커지면 조직비용(organization cost)도 증가한다. 조직비용

이란 살린(Salin)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sup>18)</sup> 조직비용도 기업의 크기를 제약한다. 기업이 커질수록 조직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 3. 기업과 기업가 기능에 대한 오해

여기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과 기업가 기능에 대한 오해 또는 그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사회적 기업<sup>19)</sup>

2007년 7월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sup>20)</sup> 먼저 사회적 기업 육성 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유럽에서 태동해서 미국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이다. 조직 형태에서는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중간 형태이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미국에서는 기업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윤배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윤배분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프랑스의 '앙비(Envie)', 이탈리아의 '라 스트라다 디 피아자 그랜드', 영국의 '빅 이슈(The Big Issue)', 미국의 '루비콘 프로그램즈(Rubicon Programs Inc.)'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5만 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16) Coase, Ronald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ovember 1937, pp.386-405.

17) 라스바드(2006), 앞의 책, 제9장 참조

18) Salin, Pascal., "Cartels as Efficient Productive Structure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2), 1996, pp.29-42.

19) 이 부분은 2007년 7월 발효된 사회적 기업 육성 법률, 2007년 노동부가 작성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한 내용 등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과 제안은 배진영(2010)을 참조

20) '과연 이것이 기업인가' 하는 의문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적 기업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비용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다. 둘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정부는 그런 기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서비스'란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 안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고 기획재정부는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능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이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320여 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영업 중이고, 지난 3년 동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체 사회적 기업의 약 7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한다.<sup>21)</sup>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단체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연계기업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년간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다르나 2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계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영리추구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률에 규정된 지원 내용은 재정지원을 포함한 경영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연금보험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연계기업에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다. 2007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차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36개였고, 그 중 3~4개가 안정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2009년 약 1,900억 원이고 2010년에는 약 1,500억 원이다.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이 다른 점을 재투자자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에 창출된 이윤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할 것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 재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주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후원자 대표 등이 사회적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사외이사 제도보다 더 '사회주의화된 제도'이다.

재투자의 엄격한 제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은 상법상의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다른 기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는 관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생존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의 존재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독특한 기업 제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 정부가 간섭할 여지도 많아 보인다. 그리고 예측컨대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강력한 이해집단이 될 가능성도 높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벌써 많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지금부터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원은 취약계층이 아닌 정상적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구축하게(crowding out)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기존의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부품의 구매 계약을 변경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변경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 한 명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면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 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경우에 일반 기업 노동자 한 명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sup>22)</sup> 정부

21)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통계는 배진영(2010), p.13 재인용

22)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경우에 민간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일자리는 하나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 세금을 징수하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점은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든 일반 기업에 지원하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지원의 효과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도가 기업가정신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의 저하는 기업의 생존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업가-노동자인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가로서의 정신의 저하를 초래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와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의 독립심을 저해하고 의존적이게 만들 가능성을 증대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은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가 그런 개념을 넓게 확장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커져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증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이나 가구의 수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 정부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해 온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이 증대한다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기능의 증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기업의 이윤동기와 달리 공동체 이익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 증대는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가? 정부의 역할 증대는 시장의 크기를 제약하고 그런 시장은 분업의 정도를 결정한다. 정부의 역할 증대는 분업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위는 소비행위이기 때문에 경

제성장을 저하시킨다. 정부의 행위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효용 또는 만족도를 낮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행위는 잘해야 민간 일자리를 단순히 이전하거나 민간 일자리의 절대 수를 줄이게 만든다.<sup>23)</sup>

넷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발적인 자선의 크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실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것이 어떤 지원이라도 모두 자발적인 자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 의무 또는 도덕적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자발적인 자선의 위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설립 동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성장, 고용 창출, 세금 납부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이윤동기를 비록 부분적이지만 부정하고 있다. 물론 바로 그 이유로 정부가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개인 소유의 회사이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식회사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회사 대표자나 기업가에 의한 이윤동기의 부정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라는 제도와 잘 맞지 않는 제도이다. 그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생산이나 자본의 모집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경제를 비효율적이게 만들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가가 취약계층에게 속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착취의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기업가가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에게 어떤 특혜를 베푼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점은 사회적 기업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어낼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착취의 가

23) 정부의 행위는 다른 문제들도 만들어내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과 관련된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이 점은 정부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해당된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종 도덕적 문제 또는 윤리적 문제도 만들어낸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지원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폐해도 만들어낼 수 있다.

### 기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오해 또는 비판<sup>24)</sup>

기업가의 이윤 획득을 마치 사악한 일이거나 기껏해야 불필요한 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윤이 클수록 시장에서 기업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행위는 그만큼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소비자의 욕구를 잘 충족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윤을 창출한 기업가를 칭찬해야 하지만 손실을 본 기업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된다. 제3자가 손실을 본 기업가를 저주할 권리는 없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소비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재화를 생산한 것이다. 제3자가 그런 그를 비난할 권리는 없다.

최근에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과도한 이윤을 문제 삼으면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가공개는 필연적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를 불러올 것이다. 가격 규제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나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또 자선단체들이나 사회활동가들이 과도한 이윤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과도한 이윤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는 뒤에서 서술할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윤에 대한 비난은 기업가에 대한 비난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냉소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본가-기업가가 부유한 것은 자신보다 덜 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임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리고 범죄로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성공한 기업가의 성공은 그가 소비자에게 봉사한 증거임이 분명하다.

기업을 제국으로, 기업가를 그 제국의 왕이나 군주로 묘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제국’, ‘철강 왕 카네기’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나 표현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오해가 잘못된 정부정책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기업가와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기업가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지 기업가와 기업이 소비자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소비자가 당장이라도 어떤 기업가와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외면한다면 그 기업가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기업가와 기업은 매일매일 소비자의 투표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황제 경영’은 어떤가? 그것은 종종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의 기업가나 비즈니스 그룹 총수가 혼자서 고독하게 내리는 의사결정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기업의 소유자인 기업가는 홀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기업가의 의사결정 능력이 지닌 특성이 그런 것이다. 의사결정은 고용된 경영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피고용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그런 기능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황제 경영이라는 용어는 기업가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좌파가 기업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 반기업적 정부정책

반기업적 정부정책으로 ‘시장지배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업이 시장점유율만큼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다. 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24) 더 풍부한 사례는 김영웅·안재욱·전용덕,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1999를 참조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 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기업과 기업가는 오히려 소비자의 지배에 복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만약 기업과 기업가가 소비자의 욕구를 외면하는 순간, 그 기업은 존립할 수 없고 기업가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러므로 시장지배력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정부의 정책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력집중'이라는 것이 있다.

소비자 보호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소비자주의(consumerism)를 만나게 된다. 소비자주의의 근거에는 '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류경제학에 기초한 사회운동가들은 소비자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그러나 시장에는 생산자도 존재하고 있고 생산자의 권리도 소비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소비자주권 개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정부 부서가 정하는 규칙이나 정책은 그 점에서 상당부분이 반기업적이다.

이윤동기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이라는 조직은 다수의 생산구조(structure of production) 중의 하나이다. 장기계약, 수직통합, 비즈니스 그룹(business group), 프랜차이즈 등도 생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생산구조의 일종이다. 그런 생산구조 중의 하나이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자발적 카르텔'이다. 자발적 카르텔은 장기계약 등과 같이 생산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생산구조의 일종이다. 그러나 비자발적 카르텔은 독점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발적 카르텔을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가의 생산구조 선택을 방해하여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정부가 어떤 생산구조를 억제한다면 그런 생산구조가 가장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기업과 경제는 그 만큼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는 정부가 어떤 생산구조를 지원한다면 다른 생산구조가 가장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기업과 경제는 그 만큼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생산구조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경제를 효율적이게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 정책과 규제가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생산구조를 부인하고 지주회사라는 생산구조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업의 조직은 기업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고 기업가들이 모두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인 기업 조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배구조도 기업 조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기업 조직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반기업적임이 분명하다.

사외이사의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조 등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반자본주의적 또는 반기업적 심리가 반영된 제도나 철학이다. 먼저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을 하기가 십상이다. 그 경우에 사외이사라는 제도는 기업에 비용만을 부담시킨다. 또는 사외이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위험이 매우 큰 신규 투자나 업종에 투자하는 일은 어렵게 된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사외이사는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가 소유 재산의 사용과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외이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 기업가, 자본주의 등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가의 기능 중의 하나가 자신이 맡긴 일을 수행할 경영자를 고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유자는 대주주이고 바로 그 이유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대표자만이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영향을 가늠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최근에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는 내용의 TV광고를 한 적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을 남겨서 그것으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과된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업이 기업 외적인 일,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반자본주의적 심리를 가진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두 번째 주장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면 그 기업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공헌 활동의 대부분은 소비행위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력을 잃는다면 그 나라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시장의 크기는 분업의 정도를 제약한다. 분업의 정도는 창업의 기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분업이 줄어들수록 창업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크기는 정부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가 커지면 시장은 작아지게 마련이다. 시장이 작아지는 것은 중국에는 기업과 기업가 기능의 발휘를 억제하게 된다. 정부를 작게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먼저 시장에서 기업가의 기능 또는 역할을 자세히 정의했고, 기업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조직, 비용, 생산과정 등에 대해 분석했으며,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크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책 등을 검토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초래할 부작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한 내용은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나 주장 그리고 반기업적 정부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나 주장의 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업과 기업가는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난 50여 년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점은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과 기업가는 현대의 복잡한 교환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기업과 기업가를 억제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sup>25)</sup> 그 점이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정서, 주장, 정책 등을 없애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5) 이 주장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 특히 청년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그러나 도전을 억제하는 관행이나 제도가 도전정신을 꺾어버리지는 않는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영용·안재욱·전용덕,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1999.
- 배진영,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CFE Report』, No.130. 2010. 7.
- 전용덕,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원인, 결과, 대책」, 『자유와 시장』, 2009.
- Murray N. Rothbard,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자유기업원, 2006.
- Coase, Ronald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ovember 1937, pp.386-405.
- Greaves, Percy L. Jr., Review of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by Israel M. Kirzner, *Wertfrei: A Review of Praxeological Science*, No.1, 1974, pp.17-20.
- Hazlitt, Henry, Review of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by Israel M. Kirzner, *The Freeman* 24(December); 1974, pp.756-760.
- Kirzner, Israel M.,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Mises, Ludwig von, *Human Action*, Fox & Wilkes, San Francisco, 1996.
- Rothbard, Murray N., *Review of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by Israel M. Kirzne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No.12, 1974, pp.902-912.
- , *Man, Economy, and State*, The Mises Institute, Alabama: Auburn, 1993[1962].
- Salemo, Joseph T., “The Entrepreneur: Real and Imagined,”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11, 2008, pp.188-207.
- Salin, Pascal., “Cartels as Efficient Productive Structure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2), 1996, pp.29-42.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0년 10월 8일 | 발행인 김영웅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